

【사건번호 2022-0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국토교통부
- 대상 공공데이터: 자동차종합정보 중 법인명의차량 데이터(175개 항목)

2. 사건개요

- 신청인은 자동차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목적으로 법인명의(소유) 차량 정보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유추 가능성이 있고 정보주체인 해당 법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공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3. 사실조사

가. 데이터 보유·관리 현황

- 피신청인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9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 등록 등의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이를 전자화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의 관련 데이터 제공 현황

- 피신청인은 그동안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자동차정보 제공에 관한 분쟁 조정에 따라,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소유자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정보(175개 항목)를 제공하는 “자동차종합정보 첨부형 API”를 개발하여 서비스 중임
- 이용자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API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별도의 이용약관을 통해 차량 소유자로부터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해당 API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입력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은 기본정보(32개), 제원정보(70개), 정비이력(16개), 성능점검(56개), 차대번호(1개) 등 총 175개 항목으로, 각 항목을 선택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다.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를 의미
- 이 사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 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라.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공공데이터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공공데이터법 제4조 및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신청인이 법인 소유의 차량정보를 법인의 동의없이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고(제69조의2제1항),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필요함(제69조의2제3항 및 시행령제14조의2)
- 자동차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필요한 정보*와 동의를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로 구분하고 있으며(시행령제14조의3),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인증 등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제69조의2제3항 및 시행령제14조의4)
- * 자동차 제원정보, 정비이력정보, 성능·상태점검정보 등
- **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최초등록일자, 자동차종합검사이력 등
-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소유자는 개인과 법인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데이터는 법인의 정보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한 정보이므로 자동차 소유자인 법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은 현재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차량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인 소유 차량 정보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해달라고 하였으나,
 -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동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반면에, 법인 소유 차량 정보는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기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가 법인 소유 차량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 이용자가 개인일 경우 데이터 제공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데이터 항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 “자동차종합정보 API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이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피신청인이 그에 대응하는 자동차의 정보(175개 항목)를 Open API 방식으로 제공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4조 및 제1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령,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에는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인 법인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후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받을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결정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법인이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법인과 리스 등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이용자가 존재할 경우 이 사건 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므로 해당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 이 사건 데이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데이터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조정결과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성립